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7074
등록일자	2016.3.22.
결재일자	2016.3.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세무행정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은영	추승열	송필석	김용운	주윤중	03/22 신연희
협조자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규제개혁법제팀장	신길호 김광수 박도규			

-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관련 조례 전부개정 계획

□ 추진배경

- 지방세 관계법 개정시마다 자치법규 개정해야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낭비 방지
-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합동작업으로 자치법규 기본안 마련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494(2015.8.28.)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송부』
 - 서울시 세제과-939(2016.1.20.) 『자치구 지방세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자치법규 개정안 개요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구세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위임없는 규정 정비 ⇒ **구세 기본 조례, 구세 조례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51개 조항	10개 조항	19개 조항	9개 조항

-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 정리
-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
-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정비

강 남 구
(세 무 관 리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경위 : 지방세 관계법 개정시마다 자치법규 개정해야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낭비 방지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해당사항 없음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border="0"> <tr> <td>① 관련부서 협조</td> <td>-----</td> <td>(0)</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td> <td>()</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td> <td>()</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td> <td>()</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td> <td>()</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td> <td>()</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td> <td>(0)</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td> <td>()</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td> <td>()</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0)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0)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0)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 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25개구 공통 개정사항 																											
전문가 자 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유무 검토결과 규제심사 대상아님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관련 조례 전부개정 계획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세기본조례 및 구세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16.1월 징수체계개편*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본안을 반영, 자치법규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납세자 이해도 제고

* 기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거나 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납징수 관련 조문을 지방세기본법에 명시

-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낭비 방지,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기본안 마련('15.8월)
- 서울시의 자치법규 기본안 통보
 - 서울시 세제과-939(2016.1.20.) 『자치구 지방세 자치법규 개정 추진』

2 자치법규 개정안 개요

-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구세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위임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전부개정조례안 마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51개 조항	10개 조항	19개 조항	9개 조항

※ 관련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지방세의 세목, 세율, 부과·징수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함
-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 「지방세법」 제28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3 주요개정내용

【구세 기본 조례】 51개 조항 ⇒ 10개 조항

-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조문(6개 조항)
 -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안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 허가 등의 제한(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7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안 제8조),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9조)
- 기타 납세의무자 신고·납부업무 편의성 증진(1개 조항)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안 제4조)
- 기타 법령용어 등 조문 정비(3개 조항)
 - 목적(안 제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 2조), 시행규칙(안 제 10조)

【구세 조례】 19개 조항 ⇒ 9개 조항

-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1개 조항)
 - 세율(안 제5조)
-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정비(5개 조항)
 -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안 제3조), 과세표준(안 제4조), 등록면허세 납기(안 제6조),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안 제7조), 재산세 납기(안 제8조)
- 기타 법령용어 등 조문 정비(3개 조항)
 - 목적(안 제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 2조), 시행규칙(안 제 9조)

4 개정 전·후 조문별 비교표

○ 구세 기본 조례 비교표

연번	현행	개정(안)	비고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삭제	
3	제3조(적용)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세목)	삭제	
5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6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제10조(시행규칙)	조문 이동
	제6조의2(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변경
7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삭제	
8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변경
9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	삭제	
10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삭제	
11	제11조(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삭제	
12	제12조(시세와 구세의 징수순위)	삭제	
13	제13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삭제	
14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제6조(허가 등의 제한)	
15	제15조(채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삭제	
16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17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삭제	
18	제18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삭제	
19	제19조(구세환급금의 통지 등)	삭제	
20	제2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삭제	
21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처리)	삭제	
22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삭제	
23	제23조(납세담보의 요구)	삭제	
24	제24조(납세담보물의 보관)	삭제	
25	제25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삭제	

연번	현행	개정(안)	비고
26	제26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삭제	
27	제27조(구세확정 전 보전 압류)	삭제	
28	제28조(수색)	삭제	
29	제29조(질문·검사권)	삭제	
30	제30조(참여자의 설정)	삭제	
31	제31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삭제	
32	제32조(계속수입의 압류)	삭제	
33	제33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제8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34	제34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삭제	
35	제35조(공매)	삭제	
36	제36조(공매처분 유보)	삭제	
37	제37조(배분방법)	삭제	
38	제3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삭제	
39	제39조(회생절차개시 결정 시의 업무처리)	삭제	
40	제40조(조세채권의 신고)	삭제	
41	제41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삭제	
42	제42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삭제	
43	제43조(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삭제	
44	제44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삭제	
45	제45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삭제	
46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47	제47조(위원회 회의 등)	삭제	
48	제48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49	제49조(심사·의결)	삭제	
50	제50조(위원의 해촉)	삭제	
51	제51조(위원회의 수당)	삭제	
부칙			
5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53	제2조(적용례)	삭제	
54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구세 조례 비교표

연번	현행	개정(안)	비고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4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5	제5조(세율)	제5조(세율)	
6	제6조(신고 및 납부)	삭제	
7	제7조(세율)	삭제	
8	제8조(납기)	제6조(납기)	
9	제9조(비과세 신청)	삭제	
10	제10조(세율)	삭제	
11	제11조(중과세대상지역)	제7조(중과대상지역)	
12	제12조(납기)	제8조(납기)	
13	제13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14	제1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15	제15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삭제	
16	제16조(재산세 관세대장 직권등재)	삭제	
17	제17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삭제	
18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삭제	
19	제19조(납세관리인 지정)	삭제	
20		제9조(시행규칙)	신설
부칙			
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22	제2조(적용례)	삭제	
23	제3조(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5 추진일정

-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 2016.2월
- 입법예고 : 2016.3월부터 20일 기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6.4월
- 구의회 송부 : 2016.5월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016.5월

- 붙임 :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현행) 1부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현행) 1부
5. 구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서울시 세제과) 각 1부
6. 개정 전·후 조문별 비교표 각 1부